# 2019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1. **소집 통지일 :** 2019. 08. 16(금)

2. **개 최 일 시 :** 2019. 08. 26(월) 14 : 00

3. **개 최 장 소 :** 다비다의집 5층 대표이사실

4. **총 임 원 수 :** 이사 8명

5. **참석 임원수 :** 이사 5명
   윤**대표이사, 오**이사, 김**이사, 임**이사, 고**이사

6. **의 안 :**
   1. 대전원명학교 교원 명예퇴직 제청에 따른 심의

**의사경과 요령 및 의안의 결의 결과**

의장 윤** :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요즘 임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법인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님들께서 출석하였으므로 2019년도 제6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대전원명학교 교원 명예퇴직 제청에 따른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윤** : 명예퇴직 대상자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580816-2******)교사는 1983년 6월에 대전원명학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36년3개월) 성실히 교사직을 수행하시고 있던 중 본인의 자유의사(건강악화로 업무와 치료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껴 치료에 전념하고자함)에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 제1항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의한 것이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3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건에 부합되는 것이 없어 임**교사의 명예퇴직을 이사회에 승인을 얻고자 이렇게 안건에 올렸습니다. 이에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사 오** : 임**교사의 자유의사에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근무를 시키는 것도 임**교사 본인이나 장애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원안대로 임**교사의 명예퇴직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사 고** : 오**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의장 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교사의 명예퇴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의안) '대전원명학교 교원 명예퇴직 제청에 따른 심의'**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동의 후 폐회 선언하다. (폐회시간은 14:20)

위 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9년 08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천 성 원**

대 표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